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1편 특허법 13~13p 번호 : 03	문제-보기(지문)	<p>ㄱ. "실시"란 '물건의 발명'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)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	<p>ㄱ. "실시"란 '물건의 발명'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)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특허법 40~40p 번호 : 07	정답	<p>① (○) 특허법은 수출을 실시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(특허법 제2조 제3호)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10px;"> <p>특허법 제2조(정의)</p> <p>3. "실시"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물건의 발명인 경우 :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 나.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</div> <p>②~⑤ 생략</p> <p>답 ⑤</p>	<p>① (✖) 특허법은 수출을 실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(특허법 제2조 제3호)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10px;"> <p>특허법 제2조(정의)</p> <p>3. "실시"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물건의 발명인 경우 :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 나.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</div> <p>②~⑤ 생략</p> <p>답 ①, ⑤</p>
		수정 사유	정답_오류
특허법 54~54p	개념,공식-설명	<p>④ 종속항 실시례 있는 경우, 특정방법 :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(判例 2004후2260)</p>	<p>④ 종속항 실시례 있는 경우, 특정방법 :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(判例 2005후1486)</p>
		수정 사유	판례 번호 오류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2편 상표법 55~55p 번호 : 02	문제-본문	<p>③ (○) 상표법 제107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'침해행위 당시'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判例 2006다22722).</p>	<p>③ (○) 상표법 제107조(구 상표법 제65조)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'사실심변론종결 당시'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, 상표법 제109조(구 상표법 제67조)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'침해행위 당시'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判例 2006다22043 참조).</p>
		수정 사유	해설 내용 오류
디자인보호법 59~59p 번호 : 10	해설	<p>① (×)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(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항).</p>	<p>① (×)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, 제119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(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항).</p> <p>※ 시험 출제 이후 2022.2.3. 법 개정 : '특허심판원장' 삭제</p> <p>※ 2025.10.1. 법 개정 : '특허청장' → '지식재산처장', '산업통상자원부령' → '총리령' 명칭 변경</p>
		수정 사유	해설_오류
디자인보호법 158p 번호 : 44	문제-보기(지문)	<p>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)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.</p>	<p>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)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.</p>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특허법 198~198p 번호 : 05	해설	<p>해설</p> <p>①~④ 생략</p> <p>⑤ (X) 도면뿐만 아니라 명세서도 보정이 가능하다.</p>	<p>해설</p> <p>①~④ 생략</p> <p>⑤ (X)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,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특허거절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(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, 제67조의2 제1항 제2호).</p>
		수정 사유	해설_오류
디자인보호법 224~224p 번호 : 02	문제-보기(지문)	<p>02번 문제 4번 보기 지문</p> <p>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, 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02번 문제 4번 지문 해설</p> <p>④ (X)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 규정이 배제된다(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).</p>	<p>02번 문제 4번 보기 지문</p> <p>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,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02번 문제 4번 지문 해설</p> <p>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,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 규정이 배제된다(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).</p>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
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
법 개정으로 인한 정답 및 해설 오류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